

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

□ 공포 조례안 및 예산반영 현황 내역 (2024년 5월~2025년 4월)

연번	조례명 (공포일자 및 제·개정 현황)	주요 제·개정 내용	예산반영 현황	향후 예산반영 계획
1	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('24.9.30. '25.1.3. 일부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대상자 확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건강장애학생, 관외거주 市이동보호시설 보호이동 기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동 기족돌봄청년 ('24.9.30.)- 국가보훈대상자 본인, 배우자,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확대 ('25.1.3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'24.9.30 일부개정건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원료 하여 예산반영 ('25년) 12,457,729천원(본예산)▶ '25.1.3 일부개정건은 사회보장제도 추진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까지 지원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제도 협의를 적극 추진 하여 예산반영 예정
2	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'25.1.3. 타법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조례 제2조제1호리목 중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을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으로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해당없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타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로 추가 예산 편성 없음	해당없음
3	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('25.5.19. '25.3.27. '25.1.3. 일부개정)	평생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기준 금액 명시(1인당 1억 이상 / 1사고당 10억 이상) 등 이용자 안전조치 문구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해당없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존 예산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, 추가 소요 예산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매년 가입 기준 금액에 맞는 보험료 등 편성

연번	조례명 (공포일자 및 제·개정 현황)	주요 제·개정 내용	예산반영 현황	향후 예산반영 계획
4	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('24.9.30. 일부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의 책무(제3조) 중 기존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 가능 조항 추가 ○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(맞춤형 직업훈련, 직무실습 지원, 취업 알선,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) (제6조 제5호부터 제9호) ○ 기존 공동사업 추진 대상 구체화 및 용어 변경(제9조) ("공동사업 추진" → "협력체계 구축 등") 	<p>▶ ('25년) 1,558,117천원(본예산)</p>	예산 지속 편성 예정
5	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'24.7.15. 일부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 현행화(장년층→중장년층, 50세 이상 65세 미만→ 40세 이상 65세 미만) 	<p>▶ '25년 951,886천원 (4050 직무훈련, 40대 특화직업전환 훈련)</p>	<p>▶ '26년 8,925,908천원 (중장년취업 사관학교 운영)</p>
6	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('25.9.29. '24.7.15. 일부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 현행화(장년층→중장년층, 50세 이상 65세 미만→ 40세 이상 65세 미만) 및 운영종료된 시립50+센터 변경 사항 현행화 	<p>▶ '25년 951,886천원 (4050 직무훈련, 40대 특화직업전환 훈련)</p>	<p>▶ '26년 8,925,908천원 (중장년취업 사관학교 운영)</p>

연번	조례명 (공포일자 및 제·개정 현황)	주요 제·개정 내용	예산반영 현황	향후 예산반영 계획
7	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('24.5.20. 일부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(3년)를 중앙정부(성평등가족부) 실태조사 주기(2년)와 동일하게 조정 : 3년 → 2년 	<p>▶ 2022년 실태조사 이후 2025년 실태조사 예정대로 추진</p>	<p>▶ 개정된 실태조사 주기(2년)에 따라 '27년 예산반영 예정</p>
8	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('24.5.20. 타법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“복지정책실장”을 “복지실장”으로 개정 	<p>▶ 해당없음 - 단순 자구 수정으로 예산 반영 소요 없음</p>	해당없음
9	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('25.3.27. 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정책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 	<p>▶ 해당없음 - 기 운영 중인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</p>	<p>▶ ('26년) - (참여위원회) 77,500천원(안)</p>